

심 사 보 고 서

2005. 12. 15.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2 :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제안 이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40인 이하로 구성(안 제2조)
-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안 제2조)
-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 (안 제4조)
-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윤기복)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6조 "(임기)" 의 조문은 본 조항이 해촉 사항 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기 및 해촉)" 으로 수정하고

- 제13조(수당과 여비)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14조(시행규칙) 조문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하여 명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등 본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함.

○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함.

○ 안 제13조의 조문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2. 2.

제안자 : 송은섭 의원외

□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함.
-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함
- 안 제13조의 조문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함.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안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안 제13조의 조문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임기) ① (생략)</p> <p>②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p>제6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p> <p>① ~ ② (생략) (신설)</p>	<p>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p>제13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3조(수당과 여비) ----- ----- ----- ----- (삭제)</p>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1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

제2조제4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당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